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8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신촌리 일원

나. 면적 : 3,815,13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김 영 재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불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비치)

【불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구역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3,815,131㎡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주1) 변경사항은 ‘ 지정내용 ⇒ 변경내용 ’으로 표기(이하 같음)

-주2) 신설사항은 ‘ 신설내용(신설) ’로 표기(이하 같음)

-주3) 폐지사항은 ‘ 지정내용(폐지) ’로 표기(이하 같음)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 2)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1~클6, 클8	용도 허용	■ 기정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중 가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사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유치원을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의 종합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100병상 이상병원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중 다목의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한다.) •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²⁾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³⁾

-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 3)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1~클6, 클8	용도 불허	■ 지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사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과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다목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혁신클러스터용지의 특색에 맞추어 사용한다. • 클러스터 용지내 담장 설치는 입주기관의 특색에 맞추어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 인접블록(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7	용도 허용	■ 지정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중 가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사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유치원을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의 종합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100병상 이상병원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중 다목의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창고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한다.) •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³⁾

-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 3)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7	용도	불허	■ 지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관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혁신클러스터용지의 특색에 맞추어 사용한다. - 클러스터 용지내 담장 설치는 입주기관의 특색에 맞추어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업무용지(변경)

■ 중심상업(특별계획구역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S2	상4,5,6,7 상3	용도	허용
			권장
			불허
		구 분	KTXY역세권(S1)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2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일반상업(상업업무)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3	상1,2 업1,2,3	용도	허용
			권장
			불허
		구 분	상업업무(S3)
		건폐율	70~80%이하
		용적률	1,000%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기정

<별표1> 상업업무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KTX역세권 (S1, S4)	숙박권장 (S2)	상업업무 (S3)
영 업 및 관 매 시설군	위락시설	○	○	X
	판매시설	●	○	○(2층이하)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숙박시설	X	●	△
문 화 및 집 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X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X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X
산 업 시설군	공장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창고시설	X	X	X
교 육 및 의 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X	○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주 거 및 업 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발전시설	X	X	X
기 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식장	X	X	X

주) 1. ○ : 허용용도, ● : 권장용도, X : 불허용도, △ : 일반업무용지중 간선도로(대로2-2)에 접하지 아니한 필지에 한하여 숙박가능

2.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변경

<별표1> 상업업무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KTX역세권 (S1, S4)	숙박권장 (S2)	상업업무 (S3)
영 업 및 매 시 설 군	위락시설	○	○	X
	판매시설	●	○	○(2층이하)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숙박시설	X	●	△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군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X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X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X
산 업 시 설 군	공장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창고시설	X	X	X
교 육 및 료 의 시 설 군	교육연구시설	○	X	○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주 거 및 무 시 설 군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폐지)	○ (오피스텔 제외) (폐지)	● (오피스텔 제외) (폐지)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발전시설	X	X	X
기 타 시 설 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식장	X	X	X

주) 1. ○ : 허용용도, ● : 권장용도, X : 불허용도, △ : 일반업무용지중 간선도로(대로2-2)에 접하지 아니한 필지에 한하여 숙박가능
 2.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시,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열람

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주거유형별 용지계획

구	분	면 적(m²)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평균 분양면적(m²)
합	계	748,709	10,451	26,127	—
단	독 주 택	156,836	531	1,327	—
	이 주 자 택 지	43,825	161	402	264
	협의양도인택지	113,011	370	925	330
공	동 주 택	591,873	9,390	23,475	—
	6 0 m² 이 하	45,359	942	2,355	73
	6 0 m² ~ 8 5 m²	416,035	6,859	17,147	96, 109
	8 5 m² 초 과	130,479	1,589	3,973	149
복	합 용 지	35,053	530	1,325	165

주1) 면적합계시 복합용지 면적 제외

나) 가구별 단독주택용지계획

구 분	번 호	면 적(m²)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156,836	531	1,327	
단독주택 용 지	단독1	7,753	29	73	
	단독2	40,224	138	344	
	단독3	7,713	28	70	
	단독4	19,135	62	155	
	단독5	16,444	52	130	
	단독6	14,588	47	117	
	단독7	30,456	103	258	
	단독8	8,762	31	78	
	단독9	11,761	41	10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9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1) 명 칭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 2)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3) 면 적 : 688,363m²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 3) 성 명 : 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777	12,421	2.6인/호	
단독주택		136	354	-	
공동주택		4,641	12,067	임대 2,54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결정

○에너지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 53개 노선, 9,431m

-일반도로 : 38개 노선, 8,608m

-보행자도로 : 15개 노선, 823m

○노외주차장

-4개소, 5,977m²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계	단 계 별 조 성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지보상	688	-	551	137	-	-	-	
택지조성	688	-	-	136	275	206	7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자 금 투 자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지비	562	-	450	112	-	-	-	
조성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6) 김천시 의견 및 이의반영 여부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마. 개발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4년 6월 30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688,363	100.0	
주택건 설용지	소 계	302,314	43.9	
	단독주택	31,369	4.6	
	공동주택	259,627	37.7	
	근린생활시설	11,318	1.6	
상업시설용지		20,739	3.0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공공시설 설용지	소 계	365,310	53.1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주 차 장	5,977	0.9	• 4개소
	광 장	881	0.1	• 1개소
	공 원	88,169	12.8	• 6개소(근린공원 4, 어린이공원 2)
	녹 지	50,539	7.3	• 28개소(완충녹지 11, 경관녹지 17)
	학 교	43,687	6.4	• 4개소(초 1, 중 1, 고 1, 유치원 1)
	공공청사	2,359	0.3	• 1개소
	사회복지시설	2,914	0.4	• 2개소
	하 천	30,943	4.5	• 3개소
	유 수 지	8,643	1.3	• 2개소
	종교시설	2,511	0.4	• 2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블록	면 적(m ²)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면적(m ²)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주택유형		블록	면 적(m²)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면적(m²)	비 고
	60m² 이하	소계	69,477	1,786	4,644	-	-	국민임대
		A-1BL	69,477	1,786	4,644	170	66	국민임대
	60m² ~ 85m²	소계	135,315	2,166	5,631	-	-	
		B-1BL	50,830	814	2,116	180	112	
		B-2BL	48,520	777	2,020	180	112	
		S-1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85m² 초과	소계	54,835	689	1,792	-	-	
		C-1BL	39,835	508	1,321	190	148	
		S-1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비율 : 47%(국민임대 : 27%, 10년임대 : 20%)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근린생활시설	소계	-	11,318	
	1	송천리 855번지 일원	1,090	
	2	송천리 853번지 일원	1,237	
	3	송천리 310-1번지 일원	3,609	
	4	송천리 222번지 일원	2,747	
	5	송천리 272번지 일원	2,635	

4)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상업용지	소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m ²)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감 및 가감속차선 포함
일반도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용도로	계		-	15	823	4,864	
	소로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5,977	
주차장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 외 주차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88,169	
근린공원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어린이공원	소계	-	5,913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50,539	
완충녹지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경관녹지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등학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등학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광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하천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30,943	
하 천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유수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종교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2,511	
종교시설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2,914	
사회복지시설	1	송천리 186번지 일원	658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	2,25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천시청 도시주택과(☎054-420-6351)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택지개발팀(☎053-603-2686)에 비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4일

김 천 시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용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역삼동 702-2)

3.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가. 위 치 : 김천시 용명동 산36번지 외 5필지

나. 연 면 적 : 53,732.2018㎡

다. 사업규모 : 6개동 19층 417세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주체	(주)동일티앤티 대표이사 정종희 서울 강남구 청담동 40-3	(주)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김용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시공자	에쓰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영태 (토목건축공사업 13-0150)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2-5	(주)이테크건설 대표이사 이복영, 오창석 (토목건축공사업-798)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대지면적	20,477㎡	20,204㎡
건축면적	4,587.0865㎡	11,188.2708㎡
연 면 적	59,947.9950㎡	53,732.2018㎡
층 수	18층	19층
세 대 수	348세대	417세대
사 업 비	67,407,864천원	76,185,700천원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 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 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7일

김 천 시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좋은세상주택건설(주) 대표 김영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2 학산타워 802호

3.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용

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588-2번지 외 4필지

나.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좋은세상주택건설(주) 대표 김영문 (171711-0057040)	좌 동	
대지위치	신음동 588-2, 588-3, 588-8, 595-1, 응명동 806-1	좌 동	
대지면적	7,398m ²	좌 동	
건축면적	2,204.25m ²	좌 동	
연 면 적	7,957.000m ²	좌 동	
사업규모	3개동 5층 84세대	좌 동	
사업기간	2012. 3. 20 ~ 2013. 2. 28	2012. 3. 20 ~ 2013. 4. 30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생활환경정비사업(어모그린빌리지 신규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어모그린빌리지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04일

김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환경정비사업 ◦ 김천 어모그린빌리지 신규마을조성사업
2. 위 치	◦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산75-1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4. 조성 사업비	◦ 25,762백만원(보조금 3,600, 자부담 22,162)
5. 주요 사업내용	◦ 면 적 : 114,254m ² ◦ 주택지 및 건축 계획 : 125가구(시행방식 : 입주자주도형) ◦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 연장(L) 2,428m, 폭(B) 5.5~8.5m -기타시설 : 다목적센터 1개소, 주차장 2개소, 소공원 3개소 -상수계획 : 배수지(210ton) 1개소, 상수관(D50~80mm) 4,068m -우수계획 : 우수관(D300~600mm) 2,169m -오수계획 : 마을내 오수처리시설(150ton) 1개소, 오수관(D300mm) 2,453m -기타계획 : 전력 및 통신 인입 1식, 교통안전시설 1식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01월 00일 ~ 2016년 12월 00일(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 세 서	◦ 붙임 조서와 같음
8. 「농어촌정비법」 제60조10항의 처분계획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은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귀속 되어야 함.	

※ 기타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명칭	
계		22필지		114,254	114,254						
1	어모면 도암리	725	전	344	344	노판준(조합원)					
2	어모면 도암리	726	전	162	162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3	어모면 도암리	890	임	774	774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4	어모면 도암리	891	임	555	555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5	어모면 도암리	892	임	846	846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6	어모면 도암리	893	임	2,274	2,274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7	어모면 도암리	894	임	149	149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8	어모면 도암리	895	임	1,031	1,031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9	어모면 도암리	896	임	542	542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0	어모면 도암리	897	임	235	235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1	어모면 도암리	898	임	182	182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2	어모면 도암리	899	임	152	152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3	어모면 도암리	900	임	440	440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4	어모면 도암리	900-1	답	307	307	노판준(조합원)					
15	어모면 도암리	900-2	답	331	331	노판준(조합원)					
16	어모면 도암리	901	답	3,329	3,329	노판준(조합원)					
17	어모면 도암리	산75-1	임	18,814	18,814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8	어모면 도암리	산75-9	임	298	298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19	어모면 도암리	산75-10	임	298	298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20	어모면 도암리	산75-11	임	3,522	3,522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21	어모면 도암리	산75-12	임	53,110	53,110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22	어모면 도암리	산75-13	임	26,559	26,559	그린스마트빌리지 마을정비조합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2-168호

김천1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김천1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3조의2,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김천1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기 정

－ 1단계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

• 변 경

－ 1단계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변경 없음)

－ 2단계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

다. 면 적

• 기 정(1단계) : 805,043㎡

• 변 경 : 2,228,318.8㎡(증 1,423,275.8㎡)

－ 1단계 : 803,896.8㎡(감 1,146.2㎡)

－ 2단계 : 1,424,422㎡(증 1,424,42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업유치를 통하여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거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 및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연계한 업종별 계열화, 집단화로 지역경제효과 극대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번지)

나. 성 명 : 김천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1호에 의한 공영개발

나. 개발기간

- 기 정(1단계) : 2008. 8 ~ 2012. 7. 31
- 변 경 : 2008. 8 ~ 2014. 12. 31
 - 1단계 : 2008. 8 ~ 2012. 7. 31
 - 2단계 : 2011. 4 ~ 2014. 12. 31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기 정

- 1단계(5개) : 음·식료품(C10, 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0), 비금속광물제품(C23),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전기장비(C26, C28)

• 변 경

- 1단계(5개) : 음·식료품(C10, 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0), 비금속광물 제품(C23),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C26, C28)
- 2단계(5개) : 음·식료품(C10, C11), 비금속광물 제품(C23), 금속가공제품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	기정(1단계)		변 경				비고
	면적 (㎡)	구성비 (%)	합 계		1단계 (㎡)	2단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564,748	100.0	1,517,250.1	100.0	564,257.1	952,993.0	증)952,502.1
음·식료품(C10, 11)	24,656	4.4	183,634.8	12.1	24,396.8	159,238.0	증)158,978.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49,623	8.8	49,627.7	3.3	49,627.7	—	증)4.7

구분	기정(1단계)		변 경				비고
	면적 (㎡)	구성비 (%)	합 계		1단계 (㎡)	2단계 (㎡)	
			면적 (㎡)	구성비 (%)			
비금속 광물제품(C23)	251,321	44.5	364,172.0	24.0	251,324.0	112,848.0	증)112,851.0
금속가공제품(C25)	—	—	321,719.0	21.2	—	321,719.0	증)321,719.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전기장비(C26, 28)	49,680	8.8	302,057.6	19.9	49,287.6	252,770.0	증)252,377.6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189,468	33.5	296,039.0	19.5	189,621.0	106,418.0	증)106,571.0

주)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다. 업종별 변경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계획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1단계 (㎡)	2단계 (㎡)	합 계		1단계 (㎡)	2단계 (㎡)	
	면적 (㎡)	구성 비 (%)			면적 (㎡)	구성 비 (%)			
계	2,229,465	100.0	805,043	1,424,422	2,228,318.8	100.0	803,896.8	1,424,422	
도시지역	811,271	36.4	805,043	6,228	2,228,318.8	100.0	803,896.8	1,424,422	
일반공업지역	805,089	36.1	805,043	46	2,228,318.8	100.	803,896.8	1,424,422	
자연녹지지역	6,182	0.3	—	6,182	—	—	—	—	
관리지역	516,253	23.1	—	516,253	—	—	—	—	
계획관리지역	502,565	22.5	—	502,565	—	—	—	—	
보전관리지역	13,688	0.6	—	13,688	—	—	—	—	
농림지역	901,941	40.5	—	901,941	—	—	—	—	

나. 토지이용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1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805,043	100.0	805,043	2,228,318.8	100.0	803,896.8	1,424,422.0	증)1,423,275.8
산업시설용지	564,748	70.1	564,748	1,517,250.1	68.1	564,257.1	952,993.0	증)952,502.1
지원시설용지	38,145	4.7	38,145	80,743.4	3.6	38,013.4	42,730.0	증)42,598.4
지원시설	38,145	4.7	38,145	80,743.4	3.6	38,013.4	42,730.0	증)42,598.4
공공시설용지	202,150	25.2	202,150	630,325.3	28.3	201,626.3	428,699.0	증)428,175.30
공 원	10,222	1.3	10,222	98,113.5	4.4	10,262.5	87,851.0	증)87,891.50
완충녹지	46,332	5.8	46,332	144,464.9	6.5	47,758.9	96,706.0	증)98,132.90
폐기물처리시설	22,171	2.8	22,171	20,938.9	0.9	20,938.9	-	감)1,232.10
유 수 지	12,364	1.5	12,364	37,181.1	1.7	11,664.1	25,517.0	증)24,817.10
주 차 장	5,343	0.7	5,343	14,131.7	0.6	5,347.7	8,784.0	증)8,788.70
도 로	98,138	12.2	98,138	308,017.3	13.9	98,176.3	209,841.0	증)209,879.30
변 전 소	7,580	0.9	7,580	7,477.9	0.3	7,477.9	-	감)102.10

【김천1일반산업단지(1단계) 구역】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7,379	—	47,379	
기정	①⑥	김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1구역	어모면 남산리 1666번지 일원	25,219	—	25,219	
기정	①⑦	김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2구역	어모면 남산리 1551-8번지 일원	22,160	—	22,160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7,379	—	47,379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47,379	—	47,379	100.0	지원시설용지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9	10	국지 도로	306	중로2-27	중로2-27	일반 도로	경고제2009-61호 (2009.1.29)	-
기정	소로	2	187	8	국지 도로	62	중로1-36	완충녹지85	일반 도로	경고제2009-61호 (2009.1.29)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5,343	증) 4.7	5,347.7	-	-
변경	⑧	주차장	노외주차장	어모면 남산리 1661-2번지 일원	2,834	증) 2.2	2,836.2	경고제2009-61호 (2009.1.29)	-
변경	⑨	주차장	노외주차장	어모면 남산리 1547-2번지 일원	2,509	증) 2.5	2,511.5	경고제2009-61호 (2009.1.29)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⑧	주차장	노외주차장 면적 증가 A=2,834㎡ → 2,836.2㎡ 증) 2.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⑨	주차장	노외주차장 면적 증가 A=2,509㎡ → 2,511.5㎡ 증) 2.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 공간시설(변경)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6,502 (97)	증)279	6,223.0 (97)	—	—
변경	⑧6	완충녹지	완충 녹지	어모면 남산리 1599-6번지 일원	6,502 (97)	증) 279	6,223 (97)	경고제2009-61호 (2009.1.29)	

주) ()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⑧6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 증가 $A=6,502\text{m}^2 \rightarrow 6,223\text{m}^2$ 증) 279m^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1	5,977.0	감) 59.6	5,917.4	1-1	3,216	감) 32.1	3,183.9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1-2	2,761	감) 32.1	2,733.5	〃
1	2	18,738.0	감) 166.5	18,571.5	2-1	2,800	감) 2.9	2,797.1	〃
					2-2	2,804	감) 2.3	2,801.7	〃
					2-3	2,805	감) 55.2	2,749.8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2-4	2,834	증) 2.2	2,836.2	" (주차장)
					2-5	5,848	감) 61.0	5,909.0	존치시설
					2-6	1,647	감) 169.3	1,477.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1	3	18,773.0	증) 99.2	18,872.2	3-1	1,817	감) 10.5	1,806.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3-2	1,796	감) 10.7	1,785.3	"
					3-3	1,792	감) 62.1	1,729.9	"
					3-4	2,509	증) 2.5	2,511.5	" (주차장)
					3-5	255	감) 4.9	250.1	"
					3-6	305	감) 3.9	301.1	"
					3-7	303	감) 3.4	299.6	"
					3-8	301	감) 4.2	296.8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3-9	299	감) 5.0	294.0	〃
					3-10	297	감) 3.6	293.4	〃
					3-11	295	감) 3.8	291.2	〃
					3-12	294	감) 4.5	289.5	〃
					3-13	292	감) 4.5	287.5	〃
					3-14	289	감) 4.7	284.3	〃
					3-15	287	감) 4.0	283.0	〃
					3-16	285	감) 4.3	280.7	〃
					3-17	283	감) 3.9	279.1	〃
					3-18	282	감) 5.1	276.9	〃
					3-19	283	감) 3.2	279.8	〃
					3-20	283	감) 7.7	275.3	〃
					3-21	255	증) 2.3	257.3	〃
					3-22	303	증) 5.1	308.1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3-23	303	증) 3.4	306.4	〃
					3-24	301	증) 3.8	304.8	〃
					3-25	299	증) 2.5	301.5	〃
					3-26	297	증) 4.1	301.1	〃
					3-27	295	증) 3.9	298.9	〃
					3-28	293	증) 5.2	298.2	〃
					3-29	291	증) 4.4	295.4	〃
					3-30	290	증) 3.5	293.5	〃
					3-31	288	증) 2.8	290.8	〃
					3-32	286	증) 3.8	289.8	〃
					3-33	284	증) 4.7	288.7	〃
					3-34	282	증) 4.5	286.5	〃
					3-35	280	증) 6.7	286.7	〃
3-36	282	증) 6.2	288.2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3-37	1,304	증) 91.1	1,500.1	존치시설
					3-38	293	감) 12.3	280.7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1	도로	3,794.0	126.9	3,920.9	－	3,794	증) 126.9	3,920.9	〃
1	완충 녹지	97.0	－	97.0	－	97.0	－	97.0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1	1BL 2BL 3-1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당해 산업단지에서 생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3-2 3-3 BL		산되는 제품에 한함),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배치권장
			형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권장
기정	1	3-5 ~ 3-36 3-38 BL	건축 한계선	—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당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자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동차관련시설 - 단독주택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배치권장
			형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권장
			건축 한계선	-

□ 존치시설용지(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1	2-5BL	용 도	• 허용용도 - 물류창고 및 주유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배치권장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권장
			건축한계선	—
기정	1	3-37 BL	용 도	•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율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배치권장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형 태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권장
			색 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권장
			건축한계선	—

□ 주차장시설용지(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1	2-4BL 3-4BL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 1. 관리사무소 ·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율	•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비 고
-	지원시설용지	• 소로2-187호선변 소로1-79호선변 및 가각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차량출입 불허	-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지원시설용지	•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지원시설용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변경)

1) 도 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기정)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0	4,887 (4,852)	99,715 (98,138)	5	2,799	57,632 (57,606)	3	1,046 (1,011)	17,473 (15,922)	2	1,042	24,610
대 로	1	952	24,067	-	-	-	-	-	-	1	952	24,067
중 로	6	3,477 (3,442)	71,311 (69,734)	4	2,493	54,342 (54,316)	2	984 (949)	16,969 (15,418)	-	-	-
소 로	3	458	4,337	1	306	3,290	1	62	504	1	90	543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합 계	10	4,852 (4,887)	98,176.3 (99,753.3)	5	2,799	57,326.6 (57,326.6)	3	1,046 (1,011)	16,084.3 (17,661.3)	2	1,042	24,765.4
대 로	1	952	24,207.9	-	-	-	-	-	-	1	952	24,207.9
중 로	6	3,442 (3,477)	69,536.6 (71,113.6)	4	2,493	53,949.3 (53,949.3)	2	949 (984)	15,587.3 (17,164.3)	-	-	-
소 로	3	458	4,431.8	1	306	3,377.3	1	62	497.0	1	90	557.5

주1) ()는 사업지구 밖 포함 연장 및 면적임

주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 산업단지내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합계						4,852 (4,887)						
기 정	대로	3	25	25	주간선 도로	952	교통광장1 2호	경북선 철도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중로	1	37	22	보조간 선도로	311	대로3-25	중로2-28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중로	1	38	22	보조간 선도로	881	대로3-25	남산리 1280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중로	1	36	22	보조간 선도로	422	대로3-25	소로1-국 도3-1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중로	2	27	15	집산 도로	407	대로3-25	소로3-29 2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중로	2	28	15	집산 도로	542 (577)	중로1-10	중로2-27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중로	1	40	20	보조간 선도로	879	중로1-36	중로1-38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소로	1	79	10	국지 도로	306	중로2-27	중로2-27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소로	2	187	8	국지 도로	62	중로1-36	완충녹지8 5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기 정	소로	3	292	6	특수 도로	90	중로2-27	대로1-2	보행 자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010-449호 (2010.10.11)	

주1) () 은 사업구역 밖 포함 연장 및 면적임

주2)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은 변경 되었으나 연장 및 노선은 변경 없음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5,343	증) 4.7	5,347.7		
변 경	⑧	주차장	노외주 차장	남산리 1661-2 일원	2,834	증) 2.2	2,836.2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김천시 고시 제2009-129호 (2009. 9. 10)
변 경	⑨	주차장	노외주 차장	남산리 1547-2 일원	2,509	증) 2.5	2,511.5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김천시 고시 제2009-129호 (2009. 9. 10)

주)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임

□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개소	-	10,222	증)40.5	10,262.5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	⑬	어모 공원	근린공원	남산리 산99번지 일원	10,222	증)40.5	10,262.5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경상북도고시 제2009-361호 (2009. 8. 6)

주)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임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개소		46,332	증) 1,426.9	47,758.9	-	-
변경	⑦⑧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1676-2일원	251	감) 0.6	250.4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변경	⑦⑨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1461일원	3,484	감) 0.5	3,483.5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⑧⑩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1545 일원	3,259	감) 30.8	3,228.2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㉑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1576일원	922	감) 4.8	917.2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㉒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467-1일원	10,202	증) 202.0	10,404.0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㉓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287-3일원	3,729	증) 574.6	4,303.6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㉔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384-4일원	8,888	증) 1,144.1	10,032.1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㉕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1667-1일원	6,869	감) 67.0	6,802.0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㉖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1599-6일원	6,502	감) 279.0	6,223.0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㉞	녹지	완충녹지	응명동 1013 일원	442	감) 94.3	347.7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㉟	녹지	완충녹지	남산리 299일원	1,784	감) 16.8	1,767.2	경상북도고시 제2010-449호 (2010.10.11)	

주)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임

□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변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580	감) 102.1	7,477.9		
변경	㊱	변전소	어모면 남산리 297번지 일원	7,580	감) 102.1	7,477.9	경상북도고시 제2010-449호 (2010.10.11)	-

주)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임

□ 방재시설(변경)

1)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12,364	감) 699.9	11,664.1		
변경	①	우수지	저류 시설	어모면 남산리 1255-3번지 일원	5,640	감) 534.7	5,105.3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변경	②	우수지	저류 시설	어모면 남산리 1566번지 일원	6,724	감) 165.2	6,558.8	경상북도 고시 제2009-61호 (2009. 1. 29)	-

주)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임

□ 환경기초시설(변경)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2,171	감) 1,232.1	20,938.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남산폐기물 처리장	어모면 남산리 293-1번지 일원	22,171	감) 1,232.1	20,938.9	경상북도고시 제2009-61호 (2009.1.29)	-

주)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임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구역】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	-	증) 1,424,422	1,424,422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	1,424,422	• 김천1 일반산업단지(2단계)의 계획적 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 로 결정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결정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정	변경후		
계	-	1,424,422	1,424,422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	1,424,422	1,424,422	100.0	김천1 일반산업단지(2단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면적(m ²)	노선 수	연장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면적(m ²)
합계	21	10,281	209,841	6	3,002	62,061	10	3,428	56,539	5	3,851	91,241
대로	3	3,416	85,866	-	-	-	-	-	-	3	3,416	85,866
중로	16	6,793	123,387	6	3,002	62,061	8	3,356	55,951	2	435	5,375
소로	2	72	588	-	-	-	2	72	588	-	-	-

주) 지구 외 주진입도로 연장 및 면적은 제외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3	25	25	주간선 도로	961	교통광장 12호	경북선 철도	일반 도로	경부선 철도	경고 제61호 ('09. 1.29)	-
변 경	대 로	3	25	25	주간선 도로	2,751 (961)	교통광장 12호	대로3-26호선 어모면 다남리 955	일반 도로	-		중로2-12 호선 중복 (350m ²) 경북선 철도 중복 (336m ²)
신 설	대 로	3	26	25 (25 ~50)	주간선 도로	3,032 (1,660)	어모면 다남리 972-9 (중로1- 우회선 어모면 다남리 356-1)	서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1125-1 (어모면 다남리 956-1)	일반 도로	-	-	-
신 설	대 로	3	27	25	주간선 도로	254	대로3-26 호선 어모면 다남리 972-9	중로2-7호선 어모면 다남리 972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중 로	1	10	20	보조간 선도로	1,190	대로3-7 호선	중로1-11호선	일반 도로	경부선 철도	경고 제174호 ('90. 7.13)	-
변 경	중 로	1	10	20	보조간 선도로	1,426 (877)	대로3-7 호선	대로3-25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17	일반 도로	-	-	노선 연장
변 경	중 로	1	41	20	보조간 선도로	313 (304)	중로1-10 호선	중로1-11호선	일반 도로	-	-	노선 분리
신 설	중 로	1	42	20	보조간 선도로	575	대로3-25 호선 어모면 남산리 215-1	중로1-43호선 어모면 남산리 437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1	43	20	보조간 선도로	1,372	대로3-25 호선 어모면 다남리 878	서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1236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1	44	20	보조간 선도로	308	대로3-26 호선 어모면 남산리 1805-2	중로1-43호선 어모면 남산리 437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1	45	20	보조간 선 도로	189	대로3-26 호선 어모면 남산리 499	중로2-37호선 어모면 남산리 570	일반 도로	-	-	-
기 정	중 로	2	12	15	보조간 선도로	310	중로1-10 호선	중로1-11호선	일반 도로	-	경고 제39호 ('87. 3.12)	-
변 경	중 로	2	12	15	집산 도로	1,350 (310)	중로1-43 호선 어모면 남산리 107-11	중로1-11호선	일반 도로	-	-	노선연장 및 기능변경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2	31	10~ 15	집산 도로	242	중로1-43 호선 어모면 남산리 1236	북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1826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2	15	집산 도로	300	중로1-42 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중로2-12호선 어모면 남산리 408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3	15	집산 도로	365	중로1-42 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0	중로2-34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18-7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4	15	집산 도로	435	대로3-25 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18-7	중로1-43호선 어모면 남산리 173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2	35	15	집산 도로	308	대로3-26 호선 어모면 남산리 113-10	중로1-43호선 어모면 남산리 116-8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6	15	집산 도로	176	대로3-26 호선 어모면 남산리 113-8	중로2-37호선 어모면 남산리 124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7	15	집산 도로	800	북동측구 역계 어모면 다남리 928-1	북서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570-1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3	41	12	집산 도로	301	중로2-32 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중로2-12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3	42	12	집산 도로	134	중로2-12 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중로3-41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일반 도로	-	-	-
신 설	소 로	2	189	8	국지 도로	37	중로3-41 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소로2-190호 선 어모면 남산리 438-3	일반 도로	-	-	-
신 설	소 로	2	190	8	특수 도로	35	중로1-42 호선 어모면 남산리 413	소로2-189호 선 어모면 남산리 438-3	보행 자전 용도 로	-	-	-

주) ()는 구역 밖 연장임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8,784	8,784	-	-
신설	⑩	주차장	노외주차장	어모면 남산리 118-7번지 일원	-	증) 6,053	6,053	-	-
신설	⑪	주차장	노외주차장	어모면 남산리 412-2번지 일원	-	증) 2,731	2,731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⑩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A=6,053㎡	• 산업단지내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주차수 요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
⑪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A=2,731㎡	〃

□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87,851	87,851	—	—
신설	④	제1 소공원	소공원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3,973	3,973	—	—
신설	⑤	제2 소공원	소공원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1,369	1,369	—	—
신설	⑥	제3 소공원	소공원	어모면 남산리 산117번지 일원	—	증) 5,214	5,214	—	—
신설	⑫	수변공원 (등대지)	수변공원	어모면 남산리 384-1번지 일원	—	증) 66,951	66,951	—	—
신설	⑬	근린공원	근린공원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10,344	10,34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⑬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A=10,344m ²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근린공원 신설
⑫	수변공원(등대지)	• 수변공원 신설 A=66,951m ²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등대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신설
④	제1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3,973m ²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소공원 신설
⑤	제2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1,369m ²	"
⑥	제3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5,214m ²	"

④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	증) 3,973.0	3,973.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716.5	716.5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휴양시설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20.0	20.0	-	-
신설	③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3,236.5	3,236.5	-	-

⑤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1,369.0	1,369.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242.5	242.5	-	-
신설	②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1,126.5	1,126.5	-	-

⑥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5,214.0	5,214.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산117번지 일원	-	증) 928.1	928.1	-	-
신설	②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산117번지 일원	-	증) 4,285.9	4,285.9	-	-

⑫ 수변공원(등대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66,951.0	66,951.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411번지 일원	-	증) 2,564.0	2,564.0	-	-
신설	②	조경시설	어모면 남산리 412-1번지 일원	-	증) 1,308.0	1,308.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휴양시설	어모면 남산리 1245-1번지 일원	-	증) 328.0	328.0	-	-
신설	④	교양시설	어모면 남산리 382-4번지 일원	-	증) 600.0	600.0	-	-
신설	⑤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384-1번지 일원	-	증) 62,151.0	62,151.0	-	-

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10,344.0	10,344.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1,849.0	1,849.0	-	-
신설	②	휴양시설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573.0	573.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운동시설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1,483.0	1,483.0	-	-
신설	④	교양시설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40.0	40.0	-	-
신설	⑤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6,399.0	6,399.0	-	-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개소		1,000	증) 95,706	96,706	-	-
변경	⑤①	녹지	완충녹지	중로1-10 ~ 응명동구역계	1,000	증) 3,971	4,971	건고 제461호 (‘81.12.16)	면적 확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㉑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572-4번지 일원	-	증) 772	772	-	-
신설	㉒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826번지 일원	-	증) 895	895	-	-
신설	㉓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87-1번지 일원	-	증) 1,287	1,287	-	-
신설	㉔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71-1번지 일원	-	증) 1,162	1,162	-	-
신설	㉕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907-1번지 일원	-	증) 1,448	1,448	-	-
신설	㉖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930-4번지 일원	-	증) 60	60	-	-
신설	㉗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972-6번지 일원	-	증) 3,791	3,791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㉑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37,740	37,740	-	-
신설	㉒	녹지	완충녹지	응명동 1026-2번지 일원	-	증) 105	105	-	-
신설	㉓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221번지 일원	-	증) 8,478	8,478	-	송전 선로 (철 탑) 중복 A= 353 ㎡
신설	㉔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368-1번지 일원	-	증) 3,522	3,522	-	-
신설	㉕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234-2번지 일원	-	증) 1,770	1,77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⑩②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211번지 일원	—	증) 5,627	5,627	—	—
신설	⑩③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501-14번지 일원	—	증) 10,743	10,743	—	—
신설	⑩④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05번지 일원	—	증) 5,109	5,109	—	—
신설	⑩⑤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24번지 일원	—	증) 2,684	2,684	—	—
신설	⑩⑥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870번지 일원	—	증) 3,069	3,069	—	—
신설	⑩⑦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708-1번지 일원	—	증) 3,473	3,473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㉑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확장 $A=1,000\text{m}^2$ $\rightarrow 4,971\text{m}^2$ (증 3,971m^2)	산업단지의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경북선 철도변 완충녹지 확장
㉒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772\text{m}^2$	산업단지의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 녹지 신설
㉓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895\text{m}^2$	"
㉔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287\text{m}^2$	"
㉕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162\text{m}^2$	"
㉖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448\text{m}^2$	"
㉗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60\text{m}^2$	"
㉘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3,791\text{m}^2$	"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⑨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7,740m ²	"
⑨8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105m ²	"
⑨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8,478m ²	"
⑩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522m ²	"
⑩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1,770m ²	"
⑩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5,627m ²	"
⑩3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10,743m ²	"
⑩4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5,109m ²	"
⑩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2,684m ²	"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⑩⑥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069m ²	"
⑩⑦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473m ²	"

□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⑮	송전선로 (첼탑)	어모면 남산리 285-1번지 일원	-	증) 353	353	-	⑨⑨ 완충녹 지 중복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⑮	송전선로 (첼탑)	• 송전선로(첼탑) 신설 A=353m ²	• 산업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해 송전선 로(첼탑) 신설

□ 방재시설

1)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우수지	저류시설	어모면 다남리 972-2번지 일원	-	증) 25,517	25,517	-	-

■ 우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우수지	• 우수지 신설 A=25,517㎡	•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 유 수지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51,514	-	-	51,514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1BL	6,053	①	어모면 남산리 118-7번지 일원	6,053	주차장
2BL	9,816	①	어모면 남산리 107-11번지 일원	1,192	분할 및 합병가능
		②	어모면 남산리 439번지 일원	1,238	
		③	어모면 남산리 438-1번지 일원	1,238	
		④	어모면 남산리 438-2번지 일원	1,203	
		⑤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221	
		⑥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238	
		⑦	어모면 남산리 438-2번지 일원	1,238	
		⑧	어모면 남산리 438-2번지 일원	1,248	
3BL	14,401	①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888	분할 및 합병가능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②	어모면 남산리 413번지 일원	903	
		③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03	
		④	어모면 남산리 414-1번지 일원	903	
		⑤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03	
		⑥	어모면 남산리 414-2번지 일원	903	
		⑦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03	
		⑧	어모면 남산리 414-2번지 일원	903	
		⑨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03	
		⑩	어모면 남산리 415번지 일원	903	
		⑪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03	
		⑫	어모면 남산리 415번지 일원	903	
		⑬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03	
		⑭	어모면 남산리 산120번지 일원	903	
		⑮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887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⑯	어모면 남산리 산120번지 일원	887	
4BL	11,021	①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101	분할 및 합병가능
		②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105	
		③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262	
		④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122	
		⑤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353	
		⑥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419	
		⑦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70	
		⑧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977	
		⑨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712	
5BL	10,223	①	어모면 남산리 412-2번지 일원	2,731	주차장
		②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4,131	분할 및 합병가능
		③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671	
		④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1,69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2BL 3BL 4BL 5BL-② ③ ④	지 원 시 설 용 지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른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색 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의 기준을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채 권장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권장 - 강조색 : 제한 없음

□ 주차장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BL 5BL-①	주차장	용 도	- 지정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높 이	—
		색 채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 차 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지원시설용지	•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조례 제 655호, 2008.2.28. 개정)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지원시설용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권장 - 0.6m이하의 식수대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면적 (m ²)
합계	21	10,281	209,841	6	3,002	62,061	10	3,428	56,539	5	3,851	91,241
대로	3	3,416	85,866	-	-	-	-	-	-	3	3,416	85,866
중로	16	6,793	123,387	6	3,002	62,061	8	3,356	55,951	2	435	5,375
소로	2	72	588	-	-	-	2	72	588	-	-	-

주) 주) 주 진입도로 연장(L=1.7km) 및 면적 세부조서 참조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3	25	25	주간 선도 로	961	교통광장 12호	경북선 철도	일반 도로	경부선 철도	경고 제61호 ('09. 1.29)	-
변 경	대 로	3	25	25	주간 선도 로	2,751 (961)	교통광장 12호	대로3- 26호선 어모면 다남리 955	일반 도로	-		중로2- 12호선 중복 (350m ²) 경북선 철도 중복 (336m ²)
신 설	대 로	3	26	25 (25 ~50)	주간 선도 로	3,032 (1,660)	어모면 다남리 972-9 (중로1- 우회선 어모면 다남리 356-1)	서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1125-1 (어모면 다남리 956-1)	일반 도로	-	-	-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대 로	3	27	25	주간 선도 로	254	대로3- 26호선 어모면 다남리 972-9	중로2- 7호선 어모면 다남리 972	일반 도로	-	-	-
기 정	중 로	1	10	20	보조 간선 도로	1,190	대로3- 7호선	중로1- 11호선	일반 도로	경부선 철도	경고 제174 호 ('90. 7.13)	-
변 경	중 로	1	10	20	보조 간선 도로	1,426 (877)	대로3- 7호선	대로3- 25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17	일반 도로	-	-	노선 연장
변 경	중 로	1	41	20	보조 간선 도로	313 (304)	중로1- 10호선	중로1- 11호선	일반 도로	-	-	노선 분리
신 설	중 로	1	42	20	보조 간선 도로	575	대로3- 25호선 어모면 남산리 215-1	중로1- 43호선 어모면 남산리 437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1	43	20	보조 간선 도로	1,372	대로3- 25호선 어모면 다남리 878	서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1236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1	44	20	보조 간선 도로	308	대로3- 26호선 어모면 남산리 1805-2	중로1- 43호선 어모면 남산리 437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1	45	20	보조 간선 도로	189	대로3- 26호선 어모면 남산리 499	중로2-37 호선 어모면 남산리 570	일반 도로	-	-	-
기 정	중 로	2	12	15	보조 간선 도로	310	중로1- 10호선	중로1- 11호선	일반 도로	-	경고 제39호 ('87. 3.12)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변 경	중 로	2	12	15	집산 도로	1,350 (310)	중로1- 43호선 어모면 남산리 107-11	중로1- 11호선	일반 도로	-	-	노선연 장 및 기능 변경
신 설	중 로	2	31	10~ 15	집산 도로	242	중로1- 43호선 어모면 남산리 1236	북측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1826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2	15	집산 도로	300	중로1- 42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중로2- 12호선 어모면 남산리 408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3	15	집산 도로	365	중로1- 42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0	중로2- 34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18-7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2	34	15	집산 도로	435	대로3- 25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18-7	중로1- 43호선 어모면 남산리 173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5	15	집산 도로	308	대로3- 26호선 어모면 남산리 113-10	중로1- 43호선 어모면 남산리 116-8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6	15	집산 도로	176	대로3- 26호선 어모면 남산리 113-8	중로2- 37호선 어모면 남산리 124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2	37	15	집산 도로	800	북동측 구역계 어모면 다남리 928-1	북서측 구역계 어모면 남산리 570-1	일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중 로	3	41	12	집산 도로	301	중로2- 32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중로2- 12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일반 도로	-	-	-
신 설	중 로	3	42	12	집산 도로	134	중로2- 12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중로3- 41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일반 도로	-	-	-
신 설	소 로	2	189	8	국지 도로	37	중로3- 41호선 어모면 남산리 산121	소로2- 190호선 어모면 남산리 438-3	일반 도로	-	-	-
신 설	소 로	2	190	8	특수 도로	35	중로1- 42호선 어모면 남산리 413	소로2- 189호선 어모면 남산리 438-3	보행 자전 용도 로	-	-	-

주) ()는 구역 밖 연장임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8,784	8,784	-	-
신 설	⑩	주차장	노외주 차장	어모면 남산리 118-7번지 일원	-	증) 6,053	6,053	-	-
신 설	⑪	주차장	노외주 차장	어모면 남산리 412-2번지 일원	-	증) 2,731	2,731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⑩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A=6,053㎡	• 산업단지내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주차수요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
⑪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A=2,731㎡	〃

□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87,851	87,851	-	-
신설	④	제1 소공원	소공원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3,973	3,973	-	-
신설	⑤	제2 소공원	소공원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1,369	1,369	-	-
신설	⑥	제3 소공원	소공원	어모면 남산리 산117번지 일원	-	증) 5,214	5,214	-	-
신설	⑫	수변공원 (등대지)	수변공원	어모면 남산리 384-1번지 일원	-	증) 66,951	66,951	-	-
신설	⑬	근린공원	근린공원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10,344	10,34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⑬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A=10,344㎡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근린공원 신설
⑫	수변공원(등대지)	• 수변공원 신설 A=66,951㎡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등대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신설
④	제1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3,973㎡	• 산업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소공원 신설
⑤	제2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1,369㎡	〃
⑥	제3 소공원	• 소공원 신설 A=5,214㎡	〃

④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	증) 3,973.0	3,973.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716.5	716.5	-	-
신설	②	휴양시설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20.0	20.0	-	-
신설	③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3,236.5	3,236.5	-	-

⑤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1,369.0	1,369.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242.5	242.5	-	-
신설	②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	증) 1,126.5	1,126.5	-	-

⑥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 5,214.0	5,214.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산117번지 일원	-	증) 928.1	928.1	-	-
신설	②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산117번지 일원	-	증) 4,285.9	4,285.9	-	-

⑫ 수변공원(등대지)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66,951.0	66,951.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남산리 411번지 일원	-	증) 2,564.0	2,564.0	-	-
신설	②	조경시설	어모면 남산리 412-1번지 일원	-	증) 1,308.0	1,308.0	-	-
신설	③	휴양시설	어모면 남산리 1245-1번지 일원	-	증) 328.0	328.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④	교양시설	어모면 남산리 382-4번지 일원	-	증) 600.0	600.0	-	-
신설	⑤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남산리 384-1번지 일원	-	증) 62,151.0	62,151.0	-	-

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10,344.0	10,344.0	-	-
신설	①	도로 및 광장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1,849.0	1,849.0	-	-
신설	②	휴양시설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573.0	573.0	-	-
신설	③	운동시설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1,483.0	1,483.0	-	-
신설	④	교양시설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40.0	40.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⑤	녹지 및 기타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6,399.0	6,399.0	-	-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개소		1,000	증) 95,706	96,706	-	-
변경	⑤①	녹지	완충녹지	중로1-10 ~ 응명동구역계	1,000	증) 3,971	4,971	건고 제461호 (‘81.12.16)	면적 확장
신설	⑨⑩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572-4번지 일원	-	증) 772	772	-	-
신설	⑨①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826번지 일원	-	증) 895	895	-	-
신설	⑨②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87-1번지 일원	-	증) 1,287	1,287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㉓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71-1번지 일원	-	증) 1,162	1,162	-	-
신설	㉔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907-1번지 일원	-	증) 1,448	1,448	-	-
신설	㉕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930-4번지 일원	-	증) 60	60	-	-
신설	㉖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972-6번지 일원	-	증) 3,791	3,791	-	-
신설	㉗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산31-2번지 일원	-	증) 37,740	37,740	-	-
신설	㉘	녹지	완충녹지	응명동 1026-2번지 일원	-	증) 105	105	-	-
신설	㉙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221번지 일원	-	증) 8,478	8,478	-	송전 선로 (철탑) 중복 A=353 ㎡
신설	㉚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368-1번지 일원	-	증) 3,522	3,522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⑩①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234-2번지 일원	-	증) 1,770	1,770	-	-
신설	⑩②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211번지 일원	-	증) 5,627	5,627	-	-
신설	⑩③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501-14번지 일원	-	증) 10,743	10,743	-	-
신설	⑩④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05번지 일원	-	증) 5,109	5,109	-	-
신설	⑩⑤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남산리 124번지 일원	-	증) 2,684	2,684	-	-
신설	⑩⑥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870번지 일원	-	증) 3,069	3,069	-	-
신설	⑩⑦	녹지	완충녹지	어모면 다남리 708-1번지 일원	-	증) 3,473	3,473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⑤1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확장 $A=1,000\text{m}^2$ $\rightarrow 4,971\text{m}^2$ (증 3,971m^2)	산업단지의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경북선 철도변 완충녹지 확장
⑨0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772\text{m}^2$	산업단지의 유해요소 차단 및 완화를 위해 완충 녹지 신설
⑨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895\text{m}^2$	〃
⑨2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287\text{m}^2$	〃
⑨3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162\text{m}^2$	〃
⑨4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448\text{m}^2$	〃
⑨5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60\text{m}^2$	〃
⑨6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3,791\text{m}^2$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⑨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7,740m ²	"
⑨8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105m ²	"
⑨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8,478m ²	"
⑩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522m ²	"
⑩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1,770m ²	"
⑩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5,627m ²	"
⑩3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10,743m ²	"
⑩4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5,109m ²	"
⑩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2,684m ²	"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⑩⑥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069m ²	"
⑩⑦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A=3,473m ²	"

□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⑮	송전선로 (첼탑)	어모면 남산리 285-1번지 일원	-	증) 353	353	-	⑨⑨ 완충녹지 중복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⑮	송전선로 (첼탑)	• 송전선로(첼탑) 신설 A=353m ²	• 산업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해 송전선 로(첼탑) 신설

□ 방재시설

1)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우수지	저류시설	어모면 다남리 972-2번지 일원	-	증) 25,517	25,517	-	-

■ 우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우수지	• 우수지 신설 A=25,517㎡	•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 우수지 신설

바. 용도지역계획도, 토지이용변경계획도, 기반시설변경 계획도 등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용수 수요량(m³/일)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계	3,400	3,400	12,329	3,400	8,929	증)8,929
공 업 용 수	3,000	3,000	11,085	3,000	8,085	증)8,085
생 활 용 수	400	400	1,244	400	844	증)844

※ 생활·공업용수 : 김천1 일반산업단지(1단계)에 공급예정인 김천1배수지를 증설하
여 공급 계획

•공업용수 배수지 (V=4,200m³) L.W.L. = 140.5m, H.W.L. = 144.5m

•생활용수 배수지 (V= 450m³) L.W.L. = 146.3m, H.W.L. = 148.3m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오·폐수 발생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계	2,599	2,599	7,429	2,599	4,830	증)8,430
공 업 폐 수	2,275	2,275	6,426	2,275	4,151	증)4,151
생 활 용 수	324	324	1,003	324	679	증)679

- ※ 공장폐수량에 비하여 생활오수량은 미미하므로 공장폐수와 통합하여 처리토록 계획
- ※ 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본 산업단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계열에서 처리토록 계획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김천1일반산업단지(1단계) 구역】

구 분	폐기물발생량 (톤/일)	폐기물재활용량 (톤/일)	최종처리대상량 (톤/일)
합 계	1,526.11	1,220.81	305.30
배출시설계 폐기물	253.81	203.05	50.76
	가연성	67.57	54.06
	불연성	186.24	148.99
지정폐기물	1,272.00	1,017.60	254.40
생활계폐기물	0.30	0.16	0.14

※ 사업장폐기물

- 가연성 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은 전량 외부 전문업체 위탁처리

- 불연성폐기물은 산업단지 내 자체 매립시설에서 매립

※ 생활폐기물 : 가연성 및 불연성은 김천시의 생활폐기물 기본계획에 의거 처리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구역】

■ 폐기물발생량 : 449.625톤/일

(생활폐기물 : 약 8.154ton/일, 사업장폐기물 : 395.538톤/일)

■ 폐기물처리방법

(단위 : 톤/일)

구 분		재활용	소각	매립	위탁	합계 (톤/일)
생활폐기물		3,270	3,800	1,084	—	8,154
사 업 장	배출시설계	189,674	57,821	24,057	3,408	274,960
	지정폐기물	1,317	16,051	61,049	3,423	81,840
합계(톤/일)		194,261	77,672	86,190	6,831	364,954

■ 폐기물처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폐기물발생량 20,000톤/년 이상)
- 김천1 일반산업단지(1단계)내 폐기물처리시설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시설계획(1단계 지역 남산폐기물처리장 이용)

구 분	매립면적(m ²)	매립대상폐기물(ton/일)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20,939	37.25	

라) 전력공급계획(변경)

【김천1일반산업단지(1단계) 구역】

- 본 사업대상지 남동측에 설치된 변전소에서 1,2단계 산업단지 소요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함.

구 분	전력 소요량(Kw/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10,865	297,662	증)186,797
산 업 시 설	103,068	284,945	증)181,877
기 타 시 설	7,797	12,717	증)4,920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구역】

- 한국전력공사 어모변전소(김천1 일반산업단지(1단계)내)에서 전력 공급

구 분	변압기 설비용량(kVA)	구성비(%)	비 고
계	80,504	100.0	어모변전소에서 전력공급
산업시설용지	77,980	96.9	
기타시설	2,524	3.1	

■ 전기공급 설비계획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공급가능출력	비 고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951번지 일원	45/60MVA × 2대	90,000kW	

※ 추가 전력 발생시 변압기 추가 증설후 전력공급

바) 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기정(회선)	변경(회선)			비 고
	1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계	700	1,724	700	1,024	KT김천지사와 협의후 공급
산업시설용지	241	980	241	739	
기타시설용지	469	754	469	285	

8.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규정에 의함.

【김천1일반산업단지(1단계) 구역】

구 분			계획내용	
			규모	사업비(백만원)
합 계			—	4,216
용수 공급 시설	소 계		—	4,030
	배수지	공업	V=1,500m ³	2,619
		생활		
	관로	공업	V=200m ³	673
		생활		
	기 타		∅=400mm, L=1,555m	738
폐수 처리 시설	소 계		∅=150 ~ 250mm, L=1,573m	186
	하수처리장 확장		—	—
	차집관리	신설	—	186
		보수		
	기 타		—	—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구역】

구 분		사업 계획내용	
		규모	사업비(백만원)
합 계		—	48,000
소 계			16,500
진입 도로 개설	실시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연장:1.7km, 폭원:25m(교량 3개소)	16,057
	공사감리비		410
	기 타		33
용수 공급 시설	소 계	—	6,000
	배수지	V=4,650m ³	2,500
	도수관로	Φ=400mm, L=2,400m	480
	가압펌프장	9,700ton	2,134
	실시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1식	520
	공사감리비	1식	244
	기 타	1식	122

구 분		사업 계획내용	
		규모	사업비(백만원)
하수 처리 시설	소 계	1식	25,500
	하수처리장 확장	Q=6,500m ³ /일	23,980
	차집관로 신설	Φ=400mm, L=760m	200
	실시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590
	공사감리비	1식	450
	기 타	1식	280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

1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제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054-420-66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변경 관계도서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단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소유자		권리관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686필지	686필지		969,579.0	950,482.2	805,043.0	803,896.8	-1,146.2						
1	어모남산	269	269	전	988.0	988.0	988.0	988.0	-	김천시					
2	어모남산	287-3	287-3	답	612.0	612.0	612.0	612.0	-	김천시					
3	어모남산	288-3	288-3	답	149.0	149.0	149.0	149.0	-	김천시					
4	어모남산	292	292	과	2,433.0	2,433.0	2,433.0	2,433.0	-	김천시					
5	어모남산	293-1	293-1	과	4,258.0	4,258.0	4,258.0	4,258.0	-	김천시					
6	어모남산	293-2	293-2	과	142.0	142.0	142.0	142.0	-	김천시					
7	어모남산	294	294	전	774.0	774.0	774.0	774.0	-	김천시					

	보도자료 2014.2.5.(수)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기 관 명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자료문의	지역협력담당 안계자 (054-420-5220) 주무관 성대모 (054-420-5222)
		■ 총1쪽	

(가칭) 김천 남서부 중학교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한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인 (가칭)김천 남서부 중학교(완성 6학급 120명)의 설립 계획이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

김천 남서부 5개면 초·중학교 학부모 동의와 설립추진위원회 및 임지 선정소위원회의 부지 선정으로 설립계획이 확정된 (가칭)김천 남서부 중학교에 대해 지난 1월 24일 교육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통보를 받음에 따라 소요예산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신설되는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교과 교실과 기숙사, 급식소, 다목적 강당 등의 설치를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시내 유출 방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설립 예산 외 지원되는 130억원의 인센티브는 기숙형 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실현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 남서부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계획



2014. 01. 03.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http://www.gimcheon-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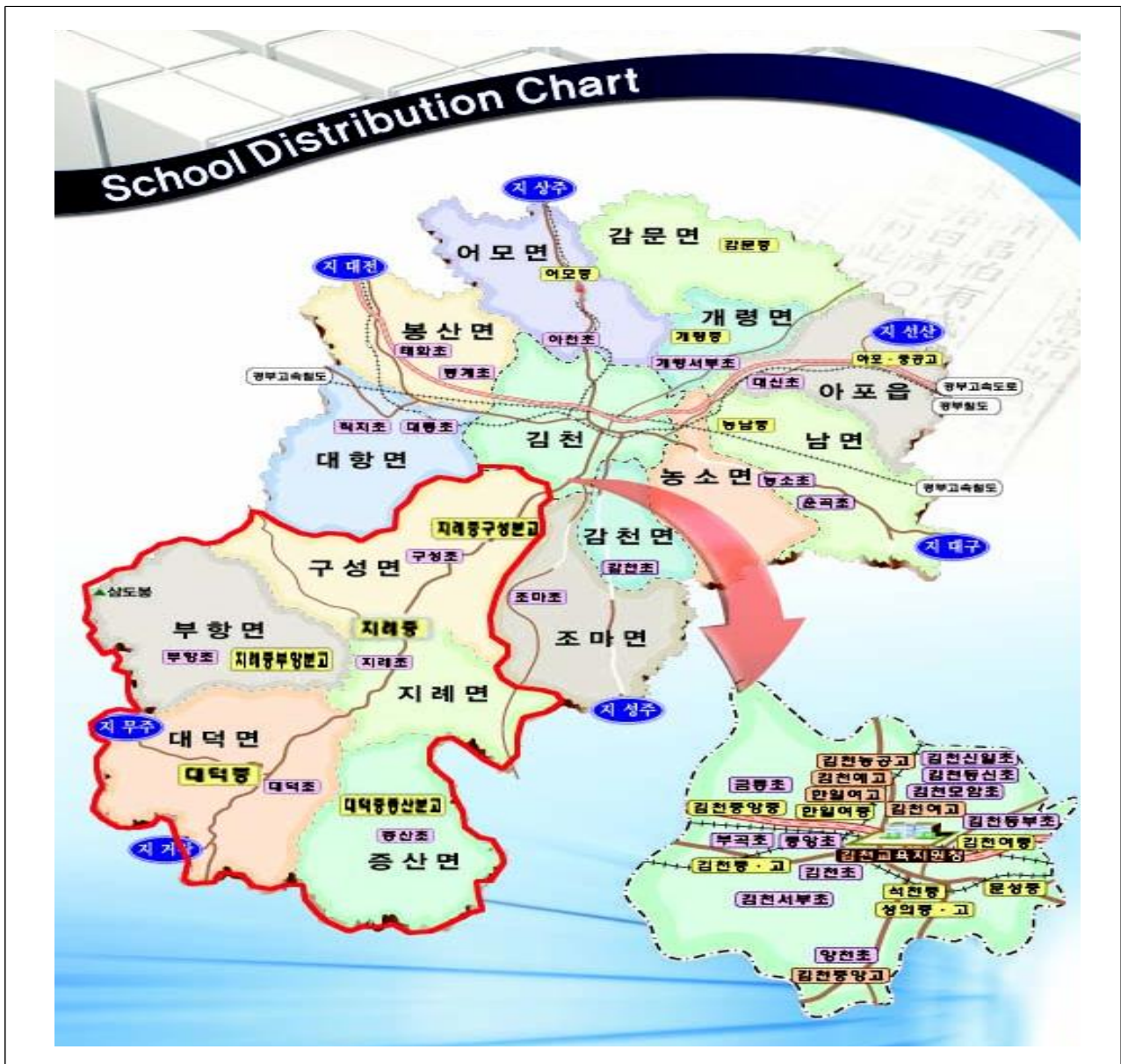
I 일반 현황

1. 학교 현황

□ 기숙형 중학교 설립 개요

학교명	설립규모		위치	부지면적	개교시기	비고
	학급수	학생수				
(가칭)김천 남서부 기숙형 중학교	6학급 (개교:3학급)	120명 (개교:90명)	대덕면	24,335㎡ (7,374평)	2017.3.1. 예정	

□ 관내 중학교 위치도 (기준: 2013.3.1.)



2. 학생 현황

□ 2013~2018년까지 추진대상 학교 학생수 현황

(단위: 명)

학교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지례중	9	15	14	15	10	14	
대덕중	21	17	14	10	11	9	
지례중 부향분교장	16	14	12	11	11	10	
지례중 구성분교장	16	16	14	16	10	10	
대덕중 증산분교장	19	12	10	7	11	15	
합 계	81	74	64	59	53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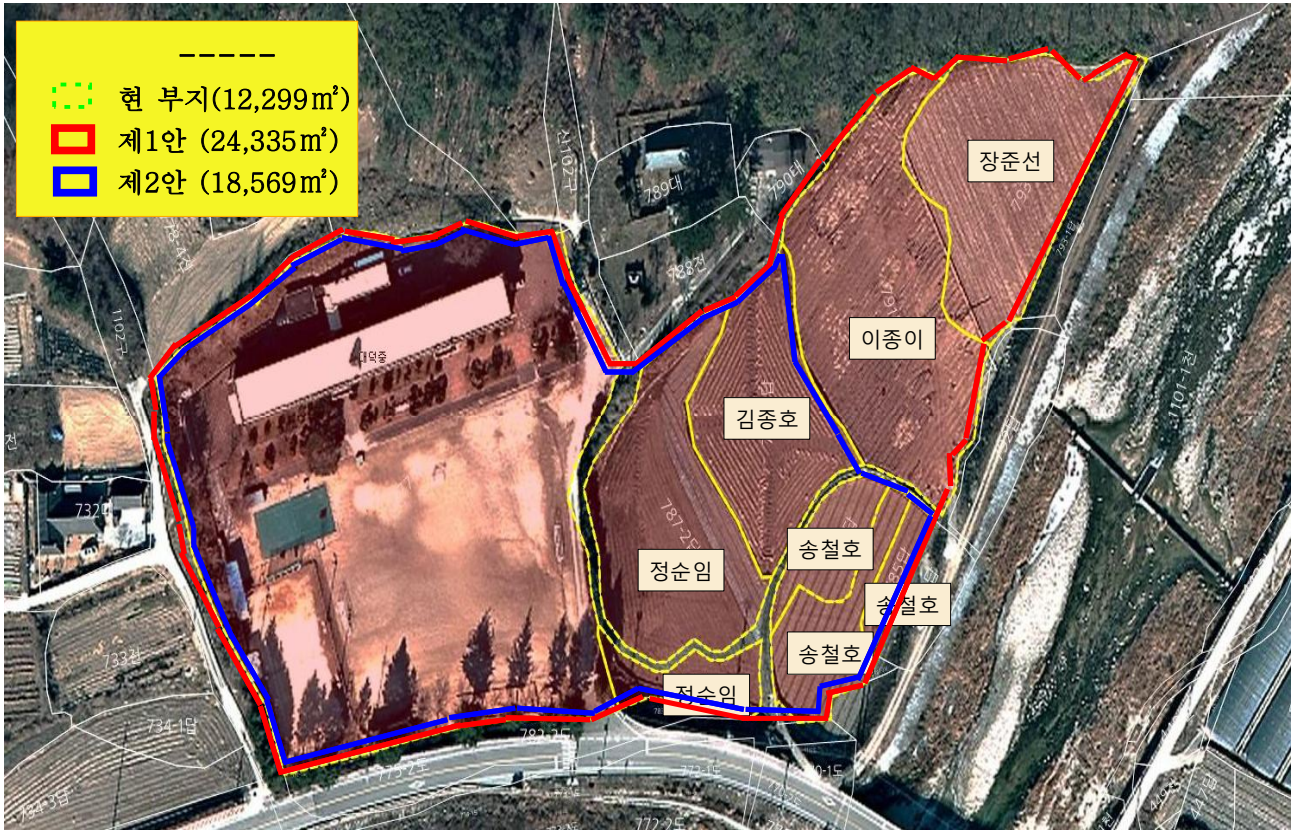
□ 학구 내 미취학 아동 현황

(2013. 11. 현재)

지역 출생년도	대덕면	지례면	부향면	구성면	증산면	계	비고
2008년 출생	5	11	8	10	6	40	
2009년 출생	14	7	4	13	4	42	
2010년 출생	10	6	7	10	9	42	
2011년 출생	7	10	7	14	5	43	
2012년 출생	6	9	4	6	5	30	
2013년 출생	7	11	5	12	3	38	
계	49	54	35	65	32	235	

3. 설립 예정 부지 현황(안)

□ 총면적: 24,335㎡ (기존학교부지 12,299㎡ + 매입부지 12,036㎡ 포함)



□ 토지 소유자 현황

지번	지목	필지수	면적(㎡)	소유자	동의여부	비고
관기리 777	학교 용지	1	12,299	경상북도교육감	-	
관기리 783-1	답	1	474	정순임	동의	
관기리 784	답	1	821	송철호	동의	
관기리 785	답	1	281	송철호	동의	
관기리 786	답	1	532	송철호	동의	
관기리 787-1	답	1	1,818	김중호	동의	근저당권자 대산농협 매각동의제출
관기리 787-2	답	1	2,344	정순임	동의	
관기리 791	답	1	3,302	이종이	동의	
관기리 793	답	1	2,464	장준선	동의	근저당권자 매각동의제출
합계		9	24,335			

□ 제1안으로 추진하려는 사유

- 지형상으로 학교 우측 토지의 일부만을 매입하면 경계구분을 위한 옹벽 설치(90m, 1억3천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학교 경계선을 직선으로 구획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천시 인근 저지대 토지(2필지-791, 793)에 빗물이 유입되어 민원 발생의 우려가 큼
- 기숙형 중학교 설립 홍보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27,000㎡ ~ 35,000㎡ 정도의 부지 확보를 요구하며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진행하였는데 협소한 부지는 그 약속과는 달라 학부모와 지역민의 원성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자칫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됨.
- 현재 학교 운동장에는 대덕면에서 2012년 6월 지역주민을 위해 테니스 확장 보수공사를 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장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 후 반드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학교 우측 토지 12,036㎡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임.

□ 설립 예정 부지 활용 계획(안)

- 기존 학교부지에 교사동과 기숙사, 체육관 및 급식소 등을 신축하고 학교 우측 토지(8필지 12,036㎡)를 편입하여 운동장으로 활용
- 오른쪽 전체를 매입하여 2m 정도 성토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 필요한 100M 코스도 나오고 여분의 부지는 학생들의 실습지 활용과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지역민과 학생들의 체육 활동장으로 활용

※ 현재 운동장에 성토할 흙은 학교 앞 국도 3호선 도로 확장공사에서 나온 것을 이미 무상 확보해 놓고 있음.

□ 학교 인근 788, 789, 790번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

- 788은 재실의 비석이 세워져 있고 789는 재실, 790은 재실을 관리하는 개인주택의 대지이며

- 788번지를 매입하고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국 각지에 사는 5인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모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에는 2017.3.1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제외함.

Ⅱ 향후 추진 계획

☐ 자체 및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 의뢰

- 2014년 1월~3월: 심사 자료 준비(신설 규모 및 소요예산 산정)

☐ 학교 신설 예산 편성

- 투융자 심사 승인 시 예산에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반영

☐ 개교 : 2017. 3. 1. 예정